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가단2028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2021.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4. 30. 접수 제50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D에게 같은 등기소 2020. 10. 28. 접수 제11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각하 부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채무자인 D이 피고 B(수익자)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증여한 후 피고 B(수익자)이 2021. 4. 28. 피고 C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C의 지위는 전득자로 보아야 하는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편병호

별지